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 · 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갱신: 1개월)
------	------	------	------------------

신청인	성명(단체명)	조직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톤)	농산물우수관리시설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등록 정보를 공개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신규신청 시)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1부 2.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 시행규칙」 제139 조에 따른 수수료
첨부서류 (갱신신청 시)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심사	→	인증 여부 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		처리기관 (인증기관)